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및 전문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, 존속 기한이 임박한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을 연장함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17개 고시  
일부개정고시

제1조(「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」의 개정) 중소기업 정보화  
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계리”를 “회계처리”로 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반하지”를 “어긋나지”로 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여입하여”를 “재편입하여”로 한다.

제43조 중 “2024년 6월 30일”을 “2027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제2조(「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」의 개정) 중소기업 창업지원  
업무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지득한”을 “알게 된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수탁·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 
운영세칙」의 개정) 수탁·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  
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익년도”를 “다음 연도”로 한다.

제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중 “징구”를 각각 “청구”로 한다.

제4조(「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」의 개정) 벤처기업육성  
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전단 중 “시달”을 각각 “통보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, 제20조제1항 및 제5항 중 “계리”를 각각 “회계처리”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보조금의 계리)”를 “(보조금의 회계처리)”로 한다.

제5조(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」의 개정)

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단서 중 “잔임 기간”을 “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」의 개정)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단서 및 제25조제5항 단서 중 “잔임 기간”을 각각 “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」의 개정)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여하를 불문하고”를 “이 무엇이든 상관없이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수취”를 “수령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)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나목 중 “신용공여액”을 “신용 공여액(타인에게 빌려주어 쓰게 하는 금액)”으로 한다.

제9조(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」의 개

정)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전사적 자원관리(ERP)시스템”을 “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(ERP: 기업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)”로 한다.

제10조(「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」의 개정)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개산급”을 “추산 지급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」의 개정)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전단 중 “익월”을 “다음 달”로 한다.

제12조(「우수 그린비즈(Green-Biz) 제도 운영규정」의 개정) 우수 그린비즈(Green-Biz) 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 용어 정의 및 해설의 [7. 에너지의 사용] 중 “습분”을 “습분(물질 내의 수분)”으로 하고, “현열”을 “현열(물체의 가열, 냉각 시 온도 변화로 나타나는 열량)”로 하며, [11. 재활용 및 폐기물] 중 “오니”를 “오니(오염된 침전물)”로 한다.

제13조(「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·공표 운영규정」의 개정)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·공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 중 “침해태양”을 “침해태양(침해를 당한 형태나 양상)”으로 한다.

제14조(「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」의 개정)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상품활동의 상품공급 및 관리 지도의 평가내용란 5) 중 “로스관리”를 “손실 관리”로 한다.

제15조(「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」의 개정)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마목의 [제작방법] 중 “형압”을 “형압(압력을 가해 표면을 울룩불룩하게 만듦)”으로 한다.

제16조(「벤처기업확인요령」의 개정)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4항 후단 및 제19조제1호 중 “익일”을 각각 “다음 날”로 한다.

제17조(「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 운영세칙」의 개정)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 중 “2024년 6월 30일”을 “2027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4조(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)</p> <p>① 참여기업·기관은 사업비 중 현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참여기업·기관의 다른 사업 자금과 명백히 구분하여 <u>계리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24조(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회계처리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7조(사업계획의 변경) ① (생략)</p> <p>② 전담기관의 장은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당초의 정보화사업별 시행계획에 <u>반하지</u>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7조(사업계획의 변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어긋나지</u>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9조(정부지원금의 회수명령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회수금중 당해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정부지원금 집행 잔액은 당해년도 정부지원금에 <u>여입하</u></p>	<p>제29조(정부지원금의 회수명령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재편입하</u></p>

여 사용하고, 이전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정부지원금 집행 잔액은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43조(유효기한) 이 고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여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3조(유효기한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 2027년 6월 30일-----  
-----.

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7조(상담내용의 보안유지) 상담 회사는 상담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<u>지득한</u> 비밀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된다.</p>	<p>제7조(상담내용의 보안유지) --- ----- ----- <u>알게 된</u> ----- -----.</p>

수탁·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 
관한 운영세칙 일부개정고시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5조(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) 중소기업부장관은 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관련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	제5조(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) 중소기업부장관은 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관련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	제5조(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) -----	제5조(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) -----	제5조(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) -----
1. 2년간(확인일이 속한 연도 및 <u>익년도</u> ) 수탁·위탁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면제	1. 2년간(확인일이 속한 연도 및 <u>익년도</u> ) 수탁·위탁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면제	1. -----	1. -----	1. ----- <u>다음 연도</u> -----
2. ~ 6. (생략)	2. ~ 6. (생략)	2. ~ 6. (생략)	2. ~ 6. (생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제6조(교육명령 운영절차) ① ~ ③ (생략)	제6조(교육명령 운영절차) ① ~ ③ (생략)	제6조(교육명령 운영절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제6조(교육명령 운영절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제6조(교육명령 운영절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.	④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.	④-----	④-----	④--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생략)	1. ~ 3. (생략)	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교육기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교육명령 대상기업으로부터 <u>징</u>	4. 교육기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교육명령 대상기업으로부터 <u>징</u>	4. -----	4. -----	4. ----- <u>청</u>

구할 수 있다.

5.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운영에  
소요되는 예산 및 교육비 징  
구계획 등을 산정하여 중소벤  
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 
한다.

6. (생략)

⑤ ~ ⑦ (생략)

구-----.

5. -----  
----- 청  
구-----  
-----  
--.

6. (현행과 같음)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

구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예산으로서, 보조금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별도계리가 가능한 예산이어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20조(보조금의 계리) ① 촉진지구사업비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해 별도 계리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장부를 비치하여 촉진지구사업의 수입 및 지출을 자본형성사업, 경상사업, 보조금 및 지방비부담액 등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회계처리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보조금의 회계처리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회계처리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회계처리-----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일부개

정고시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심의조정위원회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<u>잔임 기간</u>으로 한다.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	<p>제6조(심의조정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----- ----- --. ----- ---- <u>임기의 남은 기간</u>--.</p> <p>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#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심의조정위원회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<u>잔임 기간</u>으로 한다.</p> <p>⑤ · ⑥ (생 략)</p>	<p>제5조(심의조정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. ----- ---- <u>임기의 남은 기간</u>--.</p> <p>⑤ ·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5조(전문위원회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<u>잔임 기간</u>으로 한다.</p>	<p>제25조(전문위원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 <u>임기의 남은 기간</u>----- -----.</p>
<p>⑥ ~ ⑧ (생 략)</p>	<p>⑥ ~ ⑧ (현행과 같음)</p>

##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일부개정고시안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요령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“지역수출지원기관”이란 명칭<u>여하를 불문하고</u> 본사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수출지원기관의 지부, 지점,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.</p> <p>4. (생 략)</p> <p>제3조(지정대상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신청 또는 지정하여서는 안된다.</p> <p>1. 신청전년도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<u>수취액</u>을 포함한 수출실적이 전혀없는 내수기업</p> <p>2. ~ 7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<u>이 무엇이든 상관없이</u> --- -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지정대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수령</u>----- ----- --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#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) 영 제3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(다만,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)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<u>신용공여액</u>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</p> <p>다. (생략)</p>	<p>제2조(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- <u>신용 공여액(타인에게 빌려주어 쓰게 하는 금액)</u> ----- -----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
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

개정고시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자료제출 요구 등)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단체 또는 대기업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전사적 자원관리(ERP)시스템 등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자료제출 요구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<u>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(ERP: 기업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)</u>-----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

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
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등) ①·② (생략) ③ 개인투자조합은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<u>익월</u> 말까지 보고해야 한다. 이때 보고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. ④ (생략)	제12조(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다음 달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



